투자위험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주)iM에셋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iM에셋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iM에셋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iM에셋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주) iM에셋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년 10월 05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10월 21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6.10.05)

iM에셋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펀드코드 : 15103]

투자위험등급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iM에셋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이상,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40%이하를 투자하는 상품으로 가격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식가격 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iM에셋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저축 투자신탁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낮은 변동성 및 안정적 수익달성을 추구하는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60% 이상, 국내기업 중 성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종목에 투자하여 KOSPI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40% 이하를 투자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iM에셋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0.70	0.465	-	0.7041	72	147	226	393	878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25.10.06 ~ 26.10.05	최근 2년 24.10.06 ~ 26.10.05	최근 3년 23.10.06 ~ 26.10.05	최근 5년 21.10.06 ~ 26.10.05	설정일 이후
iM에셋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009-08-26	31.58	22.27	16.65	8.48	5.32
비교지수(%)	2009-08-26	36.29	26.02	19.34	9.58	5.80
수익률 변동성(%)	2009-08-26	13.42	10.57	9.29	8.16	6.77

주1) 비교지수: KOSPI * 40% + KIS국고채 2-3년 * 6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단위:%)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고영철	1979	책임(이사대우)	11개	2,092억원	-	-	4.41	4.56	10.5년
김민주	1995	부책임(선임)	21개	42,941억원	4.41	21.58			2.2년
홍성수	1974	책임(이사대우)	7개	653억원	-	-			18.6년
이승준	1982	부책임(수석)	-	-	-	-			2.6년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어음 및 주식 및 채권관련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신탁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 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 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 시에도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환매 방법**	
	·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

	·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제혜택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iM에셋자산운용 대표번호 : 02-707-42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im-fund.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조좌
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21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www.im-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m-fund.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iM에셋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 1510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표시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조 좌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금액이 예정좌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때까지 판매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상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의 영업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m-fund.com)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iM에셋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510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9년 8월 26일	최초 설정
2009년 9월 13일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모투자신탁의 명칭변경 등)
2010년 8월 31일	집합투자기구 규약변경(자본시장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정기갱신
2011년 9월 22일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2012년 9월 18일	회계기간 경과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2013년 2월 1일	신탁계약 변경 - 환매수수료 삭제, 수시공시 및 보고서 교부 방법 및 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3년 03월 13일	운용전문인력 변경(조민건 → 서보현)
2013년 05월 21일	운용전문인력 변경(서보현 → 이승준)
2013년 07월 30일	운용전문인력 변경(이승준 → 김홍곤)
2013년 12월 20일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작성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2015년 12월 30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처분 등 관련사항 반영, 투자대상자산의 명확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회계기간 경과 및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16년 06월 17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다른 자투자신탁 삭제(LS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16년 07월 02일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년 07월 30일	증권시장의 거래시간 연장 내용 반영
2016년 10월 24일	사명 변경으로 인한 투자신탁 명칭 및 집합투자업자명 변경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 회계기간 경과에 따른 내용 업데이트
2017년 09월 08일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4.26%→4.01%)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퇴직연금 세액공제)
2017년 12월 11일	신탁계약 변경 -모투자신탁 추가 : DGB우량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DGB장수기업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내용 추가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업데이트
2018년 04월 02일	신탁계약 변경 -모투자신탁 해지에 다른 삭제 : DGB 리딩솔루션 증권모투자신탁(채권) DGB 리딩솔루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업데이트
2018년 06월 25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정원석 → 이경원)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18년 09월 20일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4.01%→3.67%)
2019년 09월 06일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9년 09월 25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2020년 01월 17일	운용전문인력 변경(김홍곤 → 박대업)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명칭 및 운용전략 변경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0년 08월 12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대업 → 오지훈) 부책임운용인력 추가(김윤환, 조성원) 재무제표(반기)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0년 09월 16일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투자위험등급 변경(5등급(낮은위험)→4등급(보통위험))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4.24%→7.24%) 소득세법 등 개정사항 반영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변경 반영
2020년 10월 08일	부책임운용인력 삭제(조성원)
2020년 11월 18일	부책임운용인력 변경(김윤환→김태선)
2021년 04월 20일	부책임운용인력 추가(오은주) 재무제표(반기)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2021년 08월 02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오은주→이지원)

2021년 08월 20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오지훈 →김태선)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태선 → 박상민)
2021년 09월 10일	집합투자업자 사명 변경에 따른 펀드명칭, 홈페이지주소 변경 ・DGB자산운용㈜→하이자산운용㈜ ・DGB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하이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www.dgbam.com→ www.hi-asset.com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7.24%→8.13%)
2021년 10월 01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경원 →신봉관)
2022년 05월 25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상민 →서태원) 재무제표(반기)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2022년 08월 31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서태원)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2022년 09월 30일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8.13%→8.24%)
2022년 11월 08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태선→권도균)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김태선)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2023년 03월 31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지원→신정섭)
2023년 05월 20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신정섭 →강동민)
2023년 09월 22일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8.24%→6.5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태선 → 박현)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소득세법 개정내용 반영
2024년 05월 08일	주식형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하이 똑똑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하이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권도균→박대업) 재무제표(반기)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24년 06월 04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현→서진희)
2024년 06월 19일	집합투자업자 사명 변경에 따른 펀드명칭, 홈페이지주소 변경 ・하이자산운용㈜→㈜iM 에셋자산운용 ・하이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iM 에셋 퇴직연금 증권자투자 신탁 1 호(채권혼합) ・ www.hi-asset.com → www.im-fund.com
2024년 07월 11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신봉관→강동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강동민→김민주)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2024년 10월 10일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정기결산에 따른 내용 갱신
2025년 09월 17일	정기결산에 따른 내용 갱신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12.61%→ 12.95%)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개정사항 반영 지주 사명 변경사항 반영
2026년 04월 29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박대업→홍성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서진희→김성진) 재무제표(반기)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2026년 09월 15일	투자위험등급 변경(4등급(보통위험)→ 3등급(다소높은위험) 정기결산에 따른 내용 갱신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12.95%→28.19%) 채권평가회사 변경사항 반영((주)에프앤자산평가→이지자산평가(주))
2026년 09월 29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강동민→고영철)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2026년 10월 21일	부책임 운용전문인력 변경(김성진→이승준)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추가형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1)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2)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주)iM에셋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4층 02) 707 - 42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6.10.05 기준)

성명	생년 (년)	직위	운용경력년수	이력	
고영철	1979	책임 (이사대우)	10.5년	iM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26.07.01.~현재) 하나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24.04.~26.06) 다올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19.01.~24.04) IBK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15.08. ~ 19.01) 대신증권 리테일채권본부(08.01. ~ 15.08)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1개	130억원
김민주	1995	부책임(선임)	2.2년	iM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21.09~현재)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	-
성명	생년 (년)	직위	운용경력년수	이력	
홍성수	1974	책임 (이사대우)	18.6년	iM에셋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본부(25.10.~현재) 하나자산운용 주식운용팀(15.06.~25.08)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팀/마케팅팀(12.03.~15.06) 피앤피투자자문 주식운용팀(09.10.~12.02) 튜브투자자문 주식운용팀(07.06.~09.10) 한국투자신탁운용 리서치팀(06.08.~07.06)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	-
이승준	1982	부책임 (수석)	2.6년	iM에셋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본부(26.05.~현재) ㈜트리니토 재무/경영지원(22.01.~22.05) 카카오페이 투자사업실(20.06.~21.12) LINE 사업개발(18.01.~20.06) 쿼터백자산운용 알고리즘운용본부(15.06.~18.01) 안다자산운용 주식운용팀(12.12.~15.04) 현대차증권 기업분석팀(11.01.~12.12) 키움증권 기업분석팀(08.12.~10.12)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	-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026.10.05 기준)

성명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고영철	11개	2,092억원	-	-	4.41	4.56
김민주	21개	42,941억원	4.41	21.58		
성명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홍성수	7 개	653 억원	-	-	4.41	4.56
이승준	-	-	-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당사의 펀드운용은 본부별로 운용하고 있고,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4)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투자신탁으로 자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이 모투자신탁의 운용을 병행합니다.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 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비 고
이 경 원	2018.06.25 ~ 2021.09.30	책임운용전문인력
신 봉 관	2021.10.01 ~ 2024.07.10	책임운용전문인력
강 동 민	2024.07.11 ~ 2026.09.28	책임운용전문인력
고 영 철	2026.09.29 ~ 현재	책임운용전문인력
오 지 훈	2020.08.12 ~ 2021.08.19	책임운용전문인력
김 태 선	2021.08.20 ~ 2022.11.07	책임운용전문인력
권 도 균	2022.11.08 ~ 2024.05.07	책임운용전문인력
박 대 업	2024.05.08 ~ 2026.04.28	책임운용전문인력
홍 성 수	2026.04.29 ~ 현재	책임운용전문인략

오 은 주	2021.04.20 ~ 2021.08.0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이 지 원	2021.08.02 ~ 2023.03.30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 정 섭	2023.03.31 ~ 2023.05.19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강 동 민	2023.05.20 ~ 2024.07.10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김 민 주	2024.07.11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김 태 선	2020.11.18 ~ 2021.08.19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박 상 민	2021.08.20 ~ 2022.05.24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서 태 원	2022.05.25 ~ 2022.08.30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김 태 선	2022.11.08 ~ 2023.09.2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박 현	2023.09.22 ~ 2024.06.03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서 진 희	2024.06.04 ~ 2026.04.28	부책임운용전문인력
김 성 진	2026.04.29 ~ 2026.10.20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이 승 준	2026.10.21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형(채권혼합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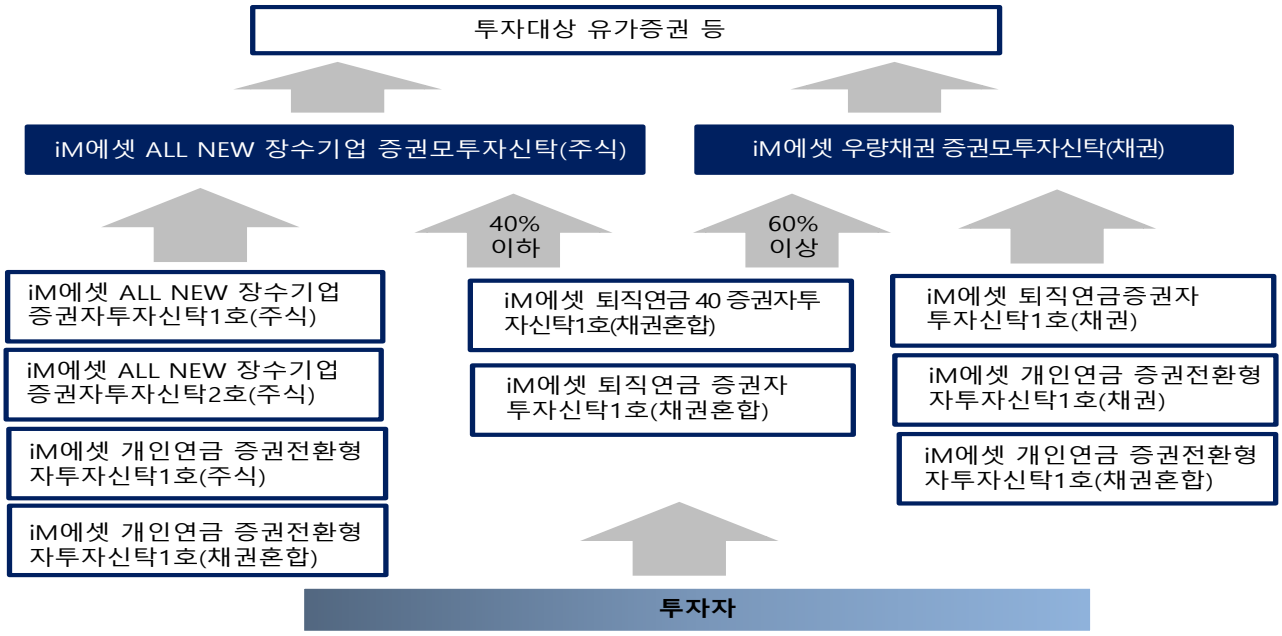

나. 모자형 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칭	주요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대상] 주식에 60% 이상, 채권 등에 40% 이하 투자 [주요 투자전략] • 국내 기업 중 성장성과 지속경영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종목을 선별하여 주로 투자 •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수는 80 종목 내외로 구성 •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초과수익 추구 및 시장(KOSPI)과 괴리 방지
iM에셋 우량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주요 투자대상] 채권에 60% 이상, 유동성 자산에 40% 이하 투자 [주요 투자전략] • 철저한 내재가치에 입각한 투자로 장기간 낮은 변동성 및 안정적 수익 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 운용스타일 : Passive 운용을 기반으로 Active 운용을 가미한 장기 안정적인 수익 추구 • A 등급 이상의 우량채권 위주로 투자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저축 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를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바탕으로 추가적 자본차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①	iM에셋 우량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60%이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입니다.

②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40%이하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입니다.
③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10%이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 일 이내 금융기관간 단기 자금거래)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한도의 예외

상기 ① 내지 ③의 투자한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①	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국내주식	60%이상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②	채권	40%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③	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⑤	집합투자 증 권	5%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30%이하	법 제 234 조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⑥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하 일 것
⑦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100 분의 50 이하.
⑧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100 분의 50 이하
⑨	증권의 차입		규약 제 17 조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⑩	신탁업자고유 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 일 이내 금융기관간 단기 자금거래)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투자한도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은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1)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의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iM에셋 우량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①	채권	60%이상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②	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③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④	집합투자 증 권	5%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⑤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일 것)
⑥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100 분의 50 이하.
⑦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100 분의 50 이하
⑧	증권의 차입		규약 제 17 조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⑨	신탁업자고유 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 일 이내 금융기관간 단기 자금거래)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투자한도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은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1)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의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제한

구분	주요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이 경우 이해관계인 중 집합투자 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

-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주요내용	적용예외
①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이 경우 이해관계인 중 집합투자 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마목 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③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파생상품매매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부터1개월간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⑥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⑦후순위 채권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기 투자대상의 ⑤ 내지 ⑩ 및 투자제한의 ②본문 내지 ⑤ 까지의 투자제한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이를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iM에셋 우량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구분	주요내용	적용예외
①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이 경우 이해관계인 중 집합투자 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 단기대출 라.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간
	• 자산총액의 100%까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③파생상품매매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간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⑤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기 투자대상의 ⑤ 내지 ⑧ 및 투자제한의 ②본문 내지 ④ 까지의 투자제한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이를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하고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자산총액의 40%이하를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바탕으로 추가적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혼합채권형)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초과수익의 축적을 위해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10% 범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절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은 채권형 모투자신탁에 60%이상,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40%이하를 투자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40% + KIS국고채2~3년 60%

주1)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주2) KOSPI 지수는 한국증시의 현황을 가장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고, KIS 국고채 2~3년의 수익률은 국내 금리를 대표하는 지표로서 장기 연금형 상품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특성을 지니기에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채권형 모투자신탁에 60%이상,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40%이하를 투자하는

상품으로 편입 투자신탁의 개별적 위험관리 및 시장상황에 따른 자산배분전략을 통해 시장위험을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산배분전략은 운용전략위원회에서 경제 및 증시환경 분석을 통한 엄격한 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투자위험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 대상인 국내 채권 및 국내 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모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에 관한 사항]

■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투자전략

1) 기본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 기업 중 성장성과 지속경영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종목을 선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를 하며, 장기투자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장(KOSPI)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2) 세부투자전략

● 포트폴리오 구성과정

iM에셋 Watch List (1차 투자대상 선정)

- 투자가능 iM 유니버스 내 **300여개 관심 종목을 섹터별 분류 후 집중 분석 및 개별종목 탐방**

iM에셋 Model Portfolio (2차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

- **경쟁력과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우선적 선정**
- Growth / **Valuation / Size / Fundamental / Momentum 5가지 Factor에 기초한 투자매력도 평가하여** MP **구성**

최종 포트폴리오 구성

- **Field Survey / Research Paper 및 팀회의 통해 지속성장가능성 평가**
- **월별, 분기별 성과평가 및 Re-**Balancing

●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투자대상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구성 (70%~100% 수준)
- 핵심 대형 우량주 위주로 접근 : 글로벌 경쟁력 보유 기업
- 안정적인 초과수익 추구 및 BM과의 지나친 괴리 방지
- 시장테마 및 시장주도 종목 위주로 구성(0%~30% 수준)
- 실적호전종목, Turn-around 종목 위주로 접근
- 절대적인 성장 기업 발굴을 통한 장기 초과 수익 추구

● 포트폴리오 운용전략

자산배분전략	- 마켓타이밍 최소화 전략(평균편입비율 90% 이상 유지) - 적극적인 자산배분 지양(편입비율 10% 범위 내에서 조절)
종목투자전략	-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수는 80 종목 내외로 구성 - 여러 투자 요소 중 이익모멘텀을 중점으로 투자

주1) 비교지수 : KOSPI 100% (KOSPI는 종합주가지수를 의미합니다)

주2)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서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나. 위험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은 지속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산배분전략을 지양하고 평균 주식 편입비율을 90% 수준으로 유지하여 전체 주식시장과의 괴리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위험관리를 위해 주식 편입비율을 상하 10% 범위에서 조절함으로써 시장변화에 대비하여 할 예정입니다.

다. 수익구조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한 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되며, 전체 주식시장의 움직임과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iM에셋 우량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가. 운용전략

▪ 운용철학

철저한 내재가치에 입각한 투자로 장기간 낮은 변동성 및 안정적 수익 달성을 최우선 고려

▪ 운용스타일 : Passive 운용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Carry 수익 확보를 바탕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추가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Active 운용을 가미한 투자전략을 병행

▪ 포트폴리오 구성 : A 등급 이상의 우량채권 위주로 투자하여 신용위험 최소화

※ 비교지수 : KIS 국고채 2~3 년 100%

주 1)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서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주2) KIS국고채2~3년 수익률은 국내 금리를 대표하는 지표로서 장기 채권형 상품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특성을 지니기에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나. 위험관리

▪ 일간단위 시장 Risk 요인 점검 및 주간 및 월간회의를 통해 시장위험에 대비

▪ 투자운용위원회, 투자전략회의 등 투자관련 회의를 통한 공동의사결정과 다양한 투자판단 보조 지표를

통하여 펀드매니저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종목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 시에도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어음 및 주식 및 채권관련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국가위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정치·경제적 상황, 정부정책, 과세제도 등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투자위험(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 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상기의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최근 결산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펀드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 **28.19%** 수준이므로 ㈜iM에셋자산운용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인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채권형 모투자신탁에 60%이상,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40%이하를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 투자신탁의 위험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수익률 변동성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을 곱하여 산출한 97.5% 신뢰수준의 VaR(Value at Risk) 모형을 사용합니다.

※ 위험등급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 전 위험등급	변경 후 위험등급	변경사유
2016.07.02	3등급 (중간 위험)	5등급 (낮은 위험)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으로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되고 등급분류기준이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에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험등급 변경
2020.09.16	5등급 (낮은 위험)	4등급 (보통위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2026.09.15	4등급 (보통 위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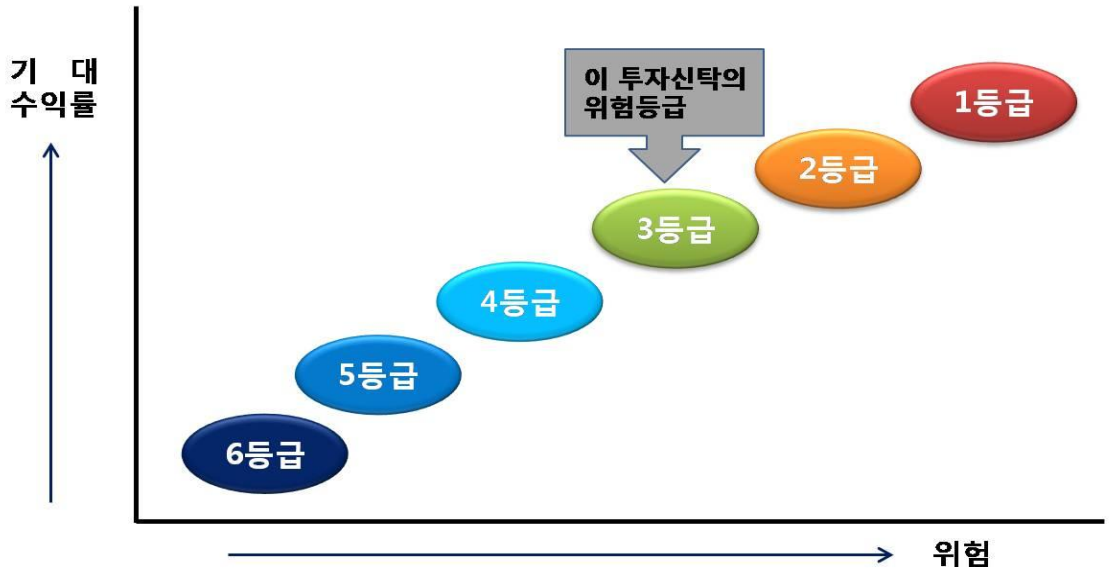

[㈜iM에셋자산운용의 위험등급 분류기준(97.5% VaR 모형 사용)_]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4등급 (보통 위험)	5등급 (낮은 위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

주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iM에셋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수익률 변동성 기준이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을 곱하여 산출한 97.5% 신뢰수준의 VaR(Value at Risk) 모형을 사용합니다.

주3)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OO%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OO%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대비 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저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가입 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한합니다.

3)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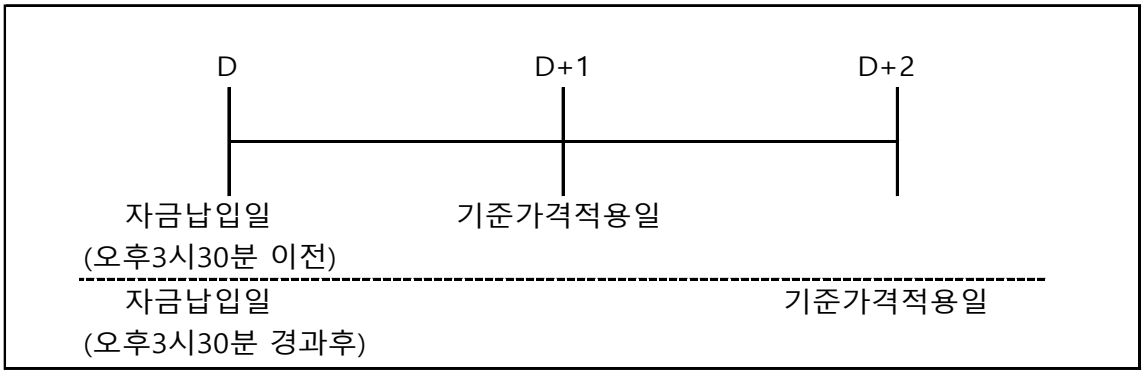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 등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전 등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나. 환매

1)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통해 가입하신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환

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D+2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D+3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영업일(D+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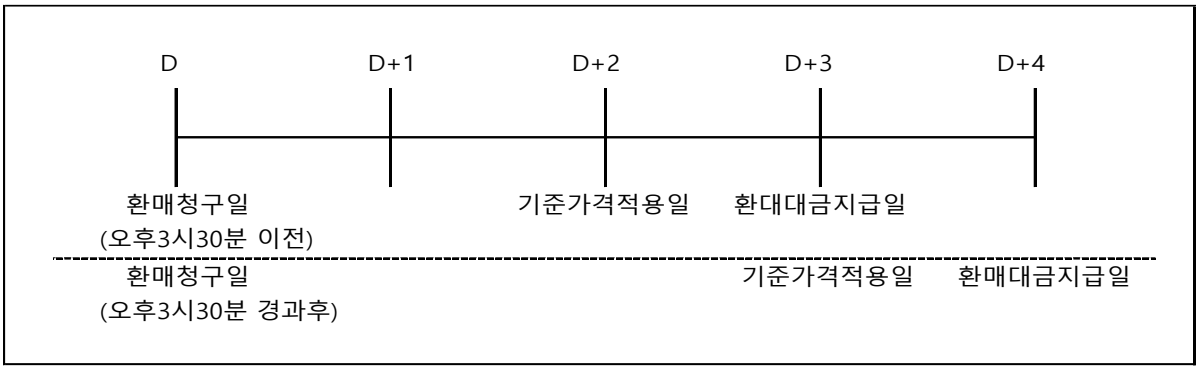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4) 환매수수료 :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 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0)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환매가능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	-	O

12.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합니다. (단 국경일 등 공휴일 제외)
공시방법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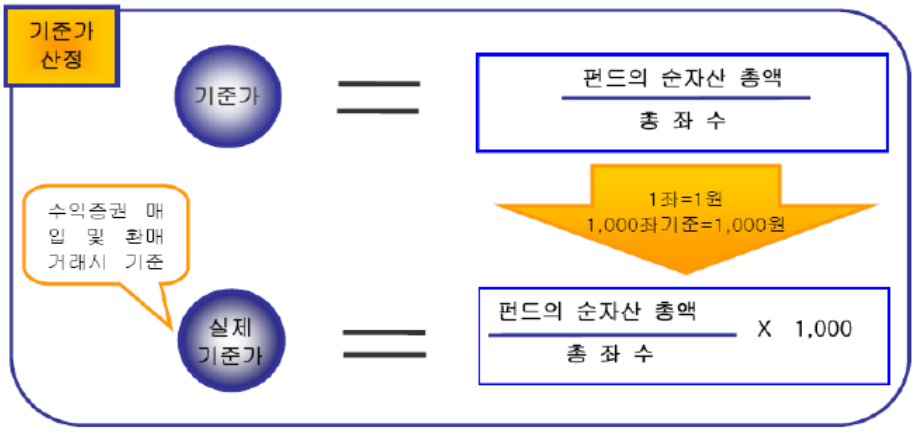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유가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 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위의 상장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어음 등 및 양도성예금증서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지급시기
선취/후취 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환매시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0.2000	최초설정일부터 매3개월 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4650	
수탁회사 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50	
총 보수	0.7000	
기타비용	0.0013	사유발생시
총 보수·비용	0.7013	
동종유형 총보수	-	
합성 총 보수 및 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0.7041	
증권거래비용	0.2089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5.08.26~2026.08.25]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5.08.26~2026.08.25]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 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 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단,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08.28.까지 발생분에 한함)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라 한다)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부동산관리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17

※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 매매수수료,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 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2,737

※ 금융비용은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 1,000만원을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

[단위 : 천원]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2	147	225	392	87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2	147	226	393	878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 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 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10월 24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 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판매사가 수익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세액공제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이내의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1월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②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 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7기(2025.08.26 - 2026.08.25)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6기(2024.08.26 - 2025.08.25)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5기(2023.08.26 - 2024.08.25)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7기	제 16기	제 15기
	(2026.08.25)	(2025.08.25)	(2024.08.25)
운용자산	1,867,034,446	659,368,650	503,277,962
증권	1,865,761,594	659,368,650	503,266,377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272,852	0	11,585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5,181	1,303	59
자산총계	1,867,039,627	659,369,953	503,278,021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296,163	1,038,133	877,085
부채총계	3,296,163	1,038,133	877,085
원본	1,157,569,508	543,882,435	434,527,598
수익조정금	194,909,951	5,825,991	-3,195,374
이익잉여금	511,264,005	108,623,394	71,068,712
자본총계	1,863,743,464	658,331,820	502,400,936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7기	제 16기	제 15기
	(2025.08.26 - 2026.08.25)	(2024.08.26 - 2025.08.25)	(2023.08.26 - 2024.08.25)
운용수익	336,356,131	39,361,331	50,364,919
이자수익	36,362	2,208	16,798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336,319,769	39,359,123	50,348,121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9,184,932	3,694,318	3,990,583
관련회사 보수	8,971,821	3,615,060	3,905,468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13,111	79,258	85,115
당기순이익	327,171,199	35,667,013	46,374,336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제17기 0백만원 발생, 제16기 0백만원 발생, 제15기 0백만원 발생)

주4)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제17기 0백만원 발생, 제16기 0백만원 발생, 제15기 0백만원 발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5.08.26 - 2026.08.25)			전기(2024.08.26 - 2025.08.25)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대차,콜 등)						
합계	0	0	0	0	0	0

(주 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0	0	0	0	0	0	32.58

(주 1) 동종유형 평균매매회전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 자료를 활용합니다. (기준일 : 2026.09.02)
(주 2)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하며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및 매매회전율]
※ iM에셋 우량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5.05.07 - 2026.05.06)			전기(2024.05.07 - 2025.05.06)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23,586	1	0.0023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대차,콜 등)	64,900	0	0.0001	34,300	0	0.0001
합계	64,900	0	0.0001	57,886	1	0.001

(주 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 2)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0	0	0	0	0	0	32.58

(주 1)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주 2) 동종유형 평균매매회전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 자료를 활용합니다. (기준일 : 2026.09.02)
(주 3)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하며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및 매매회전율]

※ iM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5.04.15 - 2026.04.14)			전기(2024.04.15 - 2025.04.14)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44,862	46	0.1031	21,238	23	0.106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3,009	3	0.0985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대차,콜 등)						
합계	47,871	49	0.1028	21,238	23	0.106

(주 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 2)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513,834	21,890	545,429	22,779	14,906	152.82	32.58

(주 1)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주 2) 동종유형 평균매매회전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 자료를 활용합니다. (기준일 : 2026.09.02)

(주 3)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하며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 목	제17기(2026.08.25) 금 액		제16기(2025.08.25) 금 액		제15기(2024.08.25)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272,852				11,585
1. 현금및현금성자산	1,272,852				11,585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865,761,594		659,368,650		503,266,377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1,865,761,594		659,368,650		503,266,377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5,181		1,303		59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2,071		1,303		59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3,110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867,039,627		659,369,953		503,278,021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3,296,163		1,038,133		877,085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10,255					
4. 수수료미지급금	3,285,908		1,038,133		877,085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3,296,163		1,038,133		877,085
자 본						
1. 원 본	1,157,569,508		543,882,435		434,527,598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706,173,956		114,449,385		67,873,338	
(발행좌수 당기: 1,157,569,508 좌	이익잉여금	511,264,005		108,623,394		71,068,712
전기: 543,882,435 좌	수익조정금	194,909,951		5,825,991		-3,195,374
전전기: 434,527,598 좌)						
(기준가격 당기: 1,597.36 원						
전기: 1,183.85 원						
전전기: 1,137.28 원)						
자 본 총 계		1,863,743,464		658,331,820		502,400,93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867,039,627		659,369,953		503,278,021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17기(2025.08.26-2026.08.25)		제16기(2024.08.26-2025.08.25)		제15기(2023.08.26-2024.08.25)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36,362		2,208		16,798
1. 이 자 수 익	36,362		2,208		16,798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340,987,815		40,478,943		51,706,164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143,737,698		18,681,244		33,680,872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197,250,117		21,797,699		18,025,292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4,668,046		1,119,820		1,358,043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4,668,046		1,119,820		1,358,043	
운 용 비 용		9,184,932		3,694,318		3,990,583
1. 운용수수료	2,619,320		1,055,363		1,140,134	
2. 판매수수료	6,090,680		2,454,285		2,651,443	
3. 수탁수수료	261,821		105,412		113,891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213,111		79,258		85,115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327,171,199		35,667,013		46,374,336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282636331		0.065578534		0.10672356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8.26 - 2026.08.25	5	6	10	15	4	7	12	19
2024.08.26 - 2025.08.25	4	5	1	2	0	0	5	7
2023.08.26 - 2024.08.25	6	6	0	0	2	2	4	5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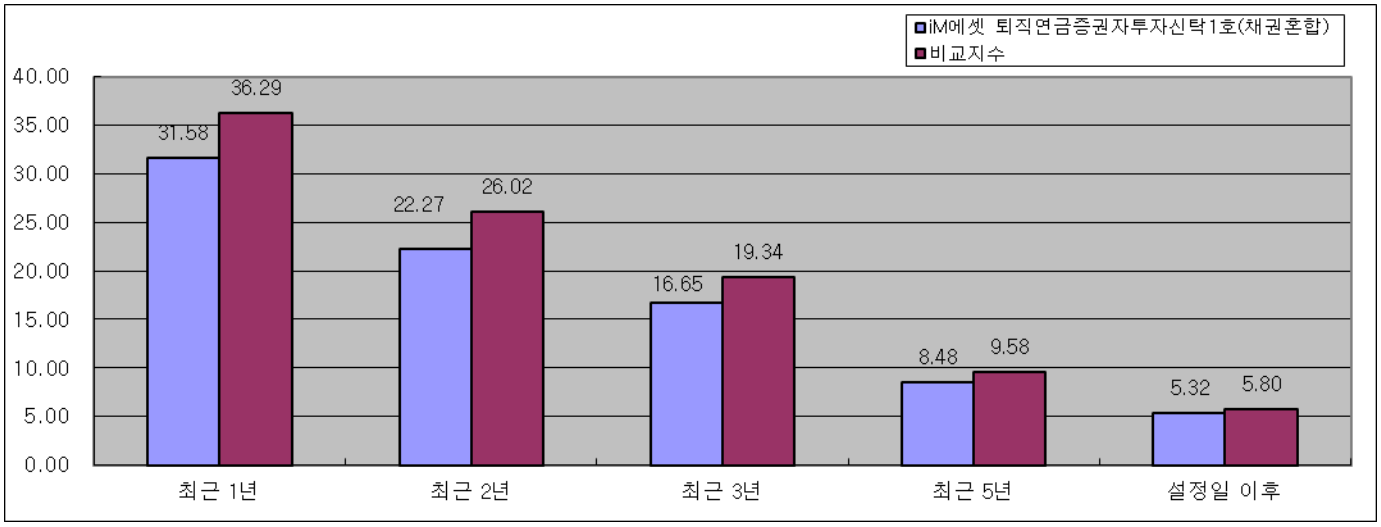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10.06 ~ 26.10.05	24.10.06 ~ 26.10.05	23.10.06 ~ 26.10.05	21.10.06 ~ 26.10.05	09.08.26 ~ 26.10.05
iM에셋 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31.58	22.27	16.65	8.48	5.32
비교지수	36.29	26.02	19.34	9.58	5.80
수익률변동성(%)	13.42	10.57	9.29	8.16	6.77

주1) 비교지수 : (0.4 * [KOSPI]) + (0.6 * [KIS국고채 02-03Y])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세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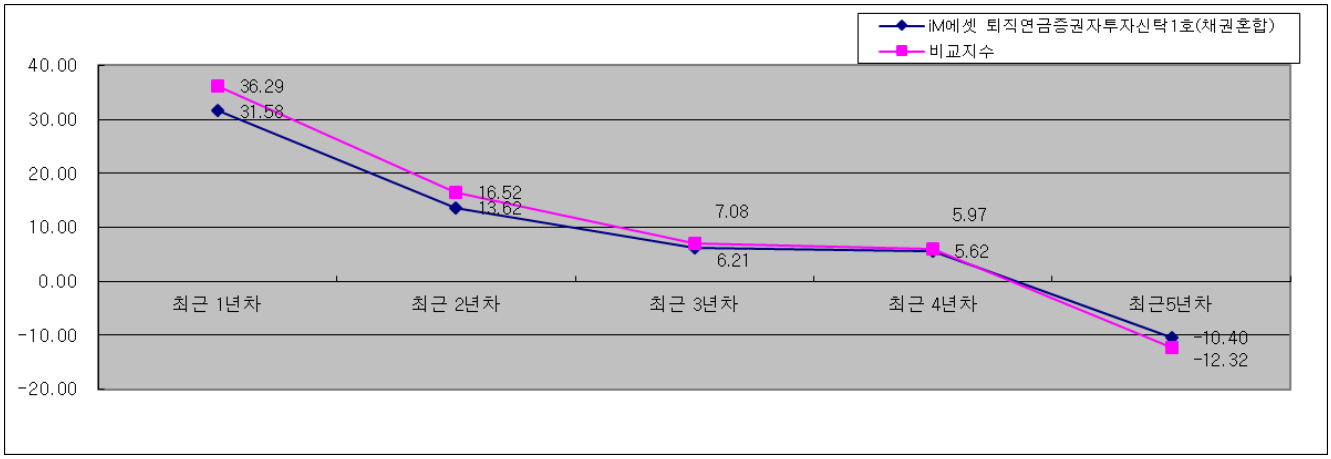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5.10.06 ~ 26.10.05	24.10.06 ~ 25.10.05	23.10.06 ~ 24.10.05	22.10.06 ~ 23.10.05	21.10.06 ~ 22.10.05
iM에셋 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31.58	13.62	6.21	5.62	-10.40
비교지수	36.29	16.52	7.08	5.97	-12.32

주1) 비교지수 : (0.4 * [KOSPI]) + (0.6 * [KIS국고채 02-03Y])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 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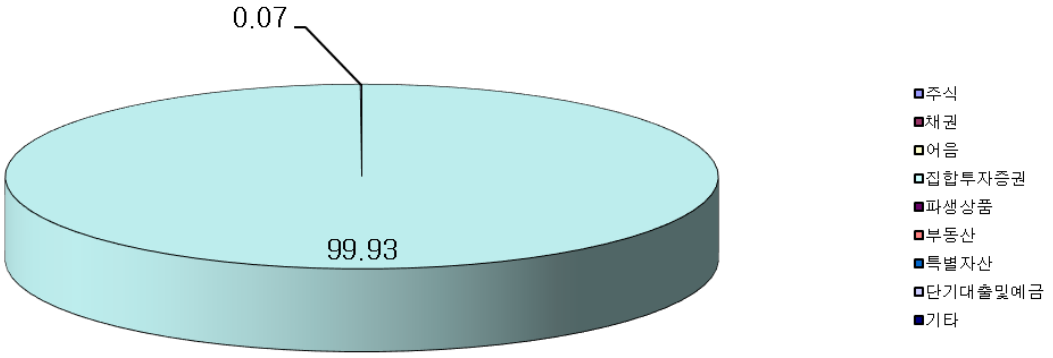

[2026.08.25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19	0	0	0	0	0	0	0	19
	(0.00)	(0.00)	(0.00)	(99.93)	(0.00)	(0.00)	(0.00)	(0.00)	(0.00)	(0.07)	(0.00)	(100.00)
합계	0	0	0	19	0	0	0	0	0	0	0	19
	(0.00)	(0.00)	(0.00)	(99.93)	(0.00)	(0.00)	(0.00)	(0.00)	(0.00)	(0.07)	(0.00)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iM에셋 우량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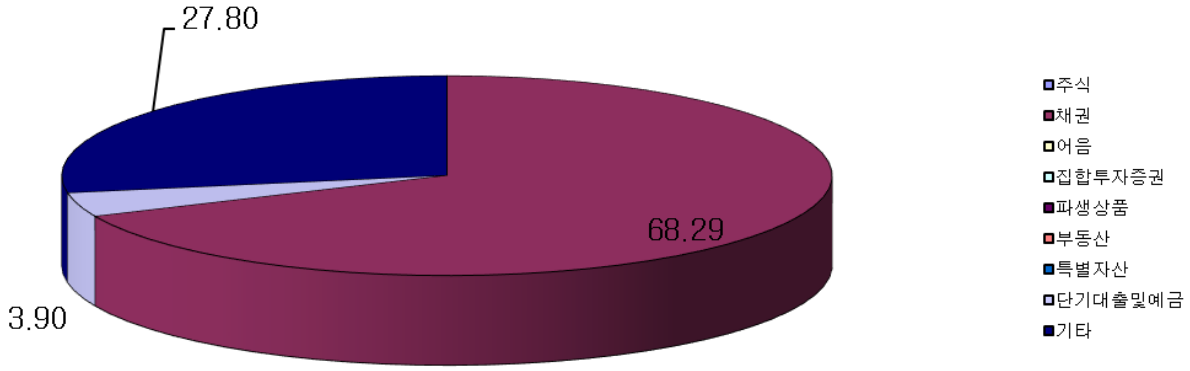

[2026.08.25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20	0	0	0	0	0	0	0	1	8	29
	(0.00)	(68.2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90)	(27.80)	(100.00)
합계	0	20	0	0	0	0	0	0	0	1	8	29
	(0.00)	(68.2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90)	(27.80)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iM 에셋 ALL NEW 장수기업 증권모투자신탁(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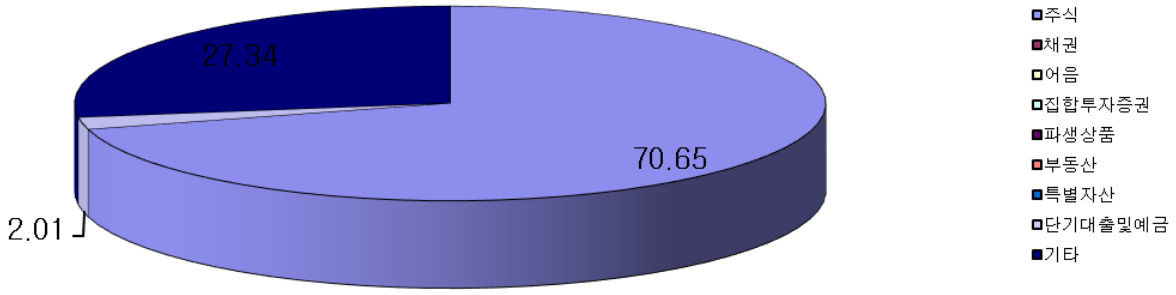

[2026.08.25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45	0	0	0	0	0	0	0	0	4	56	205
	(70.6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1)	(27.34)	(100.00)
합계	145	0	0	0	0	0	0	0	0	4	56	205
	(70.6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1)	(27.34)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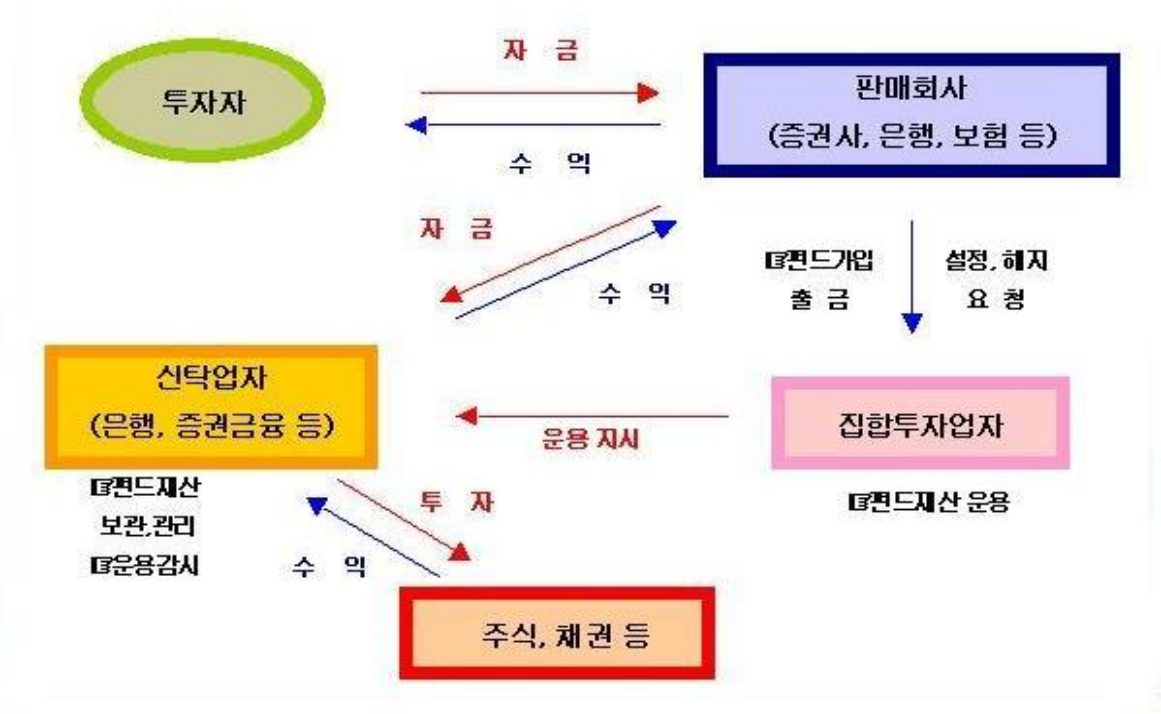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iM에셋자산운용
주소·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4층 (연락처 T. 02. 707-4200, 인터넷 홈페이지 www.im-fund.com)
회사연혁	2000년 3월 회사설립(델타투자자문) 2008년 8월 자산운용회사 전환 2008년 8월 LS자산운용㈜ 상호 변경 2016년 10월 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DGB자산운용㈜ 사명 변경 2021년 8월 하이자산운용㈜ 사명 변경 2021년 10월 블랙록자산운용㈜ 국내 공모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2024년 6월 ㈜iM에셋자산운용 사명 변경
자본금	191.7억원
주요주주현황	주식회사 아이엠금융지주(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25.12.31	2024.12.31	계정과목	2025.1.1~ 2025.12.31	2024.1.1~ 2024.12.31
현금및예치금	18,902	20,330	영업수익	25,582	23,832
유가증권	51,116	50,774	영업비용	15,519	13,400
대출채권	229	233	**영업이익**	**10,063**	**10,432**
유형자산	635	1,166	영업외수익	37	24
기타자산	8,428	7,846	영업외비용	31	51
자산총계	**79,310**	**80,350**	경상이익	10,069	10,404
기타부채	8,002	13,176	법인세비용	1,934	1,693
부채총계	**8,002**	**13,176**	**당기순이익**	**8,135**	**8,711**
자본금	19,173	19,173			
자본잉여금	30,968	30,96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이익잉여금	21,167	17,032			

자본총계	**71,308**	**67,173**			

라. 운용자산 규모

[2026.10.05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 및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301	17,977	1,521	0	7,677	6,885	0	1,948	4,120	284	31,498	72,21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은행
주소·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35(을지로 1가) (연락처 T. 1599-1111, 인터넷 홈페이지 www.kebhana.com)
회사연혁	1971.06 한국투자금융㈜ 설립 1991.07 은행으로 전환 2005.12 하나금융그룹 공식 출범 2015.09. 외환은행 합병

2) 주요업무

가)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나) 의무

①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다)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28 18,19,20층 (연락처 T. 02. 2168-0400)
회사연혁	2000년 설립
홈페이지	www.shinhanfundpartners.com

2) 주요업무

가)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나) 의무와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 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KIS 자산평가(주)	이지자산평가(주)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1 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19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3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 빌딩 3 층
연락처	02-2251-1300	02-398-3900	02-3215-1400	02-785-1410
홈페이지 주소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egap.co.kr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참조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 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 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④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

⑤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 각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로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⑥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 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 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
하지 못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②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 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 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 피 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2015년 1월 1일부터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 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위의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 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하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 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 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 각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로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아래의 수시공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상기의 수시공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③ 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 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⑪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선정원칙	1. 회사는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조사분석서비스에 한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여 조사분석서비스의 이용대가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사는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된 편익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1.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중개회사 ① 시장 정보의 정확성 및 적시성 ② 세미나 및 리서치 제공 ③ 발행 등 시황의 유용성 ④ 호가 경쟁력, 호가 대응 신속성 및 체결율 ⑤ 결제 프로세스의 정확성 2. 상장지분증권 및 상장지분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중개회사 ① 리서치 제공 능력 ② 매매 실행 능력 ③ PT 및 세미나 ④ 기업 탐방 ⑤ 시장 정보 제공

주 1)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추가기재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의 정의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